

# 협력업체 운용 가이드라인

##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롯데정보통신(주) (이하 '당사')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하여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파트너사”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파트너 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파트너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파트너사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파트너 Pool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파트너사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파트너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파트너 Pool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조] 파트너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파트너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미 선정 업체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파트너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5. 파트너사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품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 **[제4조] 신규 파트너사 등록 절차 및 등록 서류**

1. 파트너로 등록을 희망하는 파트너사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주관부서에 등록 신청을 한다.
2. 파트너사 등록 서류
  - 가. 신용평가서(1년이내)
  - 나. 파트너 추천서(당사양식)
  - 다. 사업자등록증
  - 라. 사용인감계(당사양식)
  - 마. 통장사본
  - 바.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개인인감증명서)
  - 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주민등록등본)
3. 당사는 제출서류와 파트너 신용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당사의 등록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파트너사에 대하여 파트너로 등록한다.

## **[제5조] 파트너사 평가**

1. 상시평가
  - 가. 당사의 전략적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다.
  - 나. 신용평가 정보 등을 이용하여 파트너의 신용평가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2. 정기평가
  - 가. 당사에 등록된 파트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나. 파트너는 당사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구매주관부서는 파트너의 신용평가점수를 토대로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6조]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1. 당사와 거래 중인 파트너사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가. 당사와 거래에 있어서 파트너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품질 및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건전 및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다.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마. 부도, 채권압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 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바. 협력사 정기평가결과가 부진하여 거래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아.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차. 2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등
2. 당사와 거래 중인 파트너사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가.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 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나. 경쟁사업자의 파트너사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다. 파트너사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 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단, 파트너사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 취소 가능)
  - 라. 파트너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3. 파트너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4. 등록이 취소된 파트너는 향후 2년간 당사의 파트너로 등록할 수 없다.

### **[제7조] 가이드라인 미 준수**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